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

(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하고, "은행"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상호 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함에 있어 은행과 구매기업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 여신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매출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채권을 말합니다.

가. 협력기업과 구매기업간 납품계약 체결 후 제 4 호에서 정한 발주서에 따라 협력기업이 향후 취득하게 될 미래채권

나.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제 4 호에서 정한 발주서에 따라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물품, 용역 등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함으로써 협력기업이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

4. "발주서"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등을 전자적인 방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송부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간의 물품공급 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5. "채권확정" 또는 "매출채권 확정"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발주서방식의 경우,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구매기업의 대금 지급채무가 확정된 때에 세금계산서 전문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납품완료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확정

나. 발주서전환방식의 경우,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전송하거나 구매론 지급승인 등의 명세를 은행에 전송하여 매출채권을 확정

6. "납품기한"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해야 하는 기한으로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을 말합니다.
7.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8. "발주서만기일"이라 함은 발주서상의 대금지급 예정일을 말하며, 미래대출 취급시 대출만기일로 지정되나 채권확정 시 지정되는 대금지급일로 대출만기일이 변경됩니다.

제 3 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에 의한 대출취급방식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약정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

취급방식(택 1)	상품의 내용
□ 발주서방식 미래대출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협력기업의 신청에 따라 은행은 납품기한 전까지 미래채권을 담보로 발주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출하고 채권확정 시 지정한 대금지급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받는 방식의 대출

5-06-0415(1 - 4) (2016.06.07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245호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5년)

□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	발주서방식과 같이 미래대출을 취급하되, 채권확정시에는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구매론 지급승인 등의 명세를 은행에 전송하여 매출채권을 확정하며, 은행은 별도 약정한 협력기업의 구매론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자동 실행하여 미래대출을 상환하고 대금지급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구매론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받는 방식의 대출

제 4 조 (협력기업의 추천 등)

① 구매기업은 거래하는 협력기업 중 이 협약에 따른 미래대출 거래를 할 대상 기업을 은행과 사전에 협의된 방식으로 은행에게 추천 통보합니다.

② 구매기업은 은행에 추천, 통보한 협력기업과의 거래 종료 등 계속거래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추천 해지의 의사를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협력기업 대출한도)

은행은 내규에 따라 구매기업의 협력기업들에 대한 총 대출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협력기업들에 대한 대출지원은 이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발주서 제공 등)

① 구매기업은 다음 각 호에 부합하게 발주서를 송부하기로 합니다. 단,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지정한 발주서의 만기일과 납품기한이 은행의 휴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로 합니다.

1. 은행과 사전에 합의한 전자적 방식 등을 이용할 것
2. 발주서의 만기일은 발주일(발주서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일 것
3. 발주서의 납품기한은 발주일(발주서등록일)로부터 180 일 이내 일 것
4. 기타 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발주서의 변경 및 취소 통지는 은행에게 송부한 발주서를 근거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실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미래대출을 실행한 이후에는 발주서의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서 전송이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이 협약에 따른 미래대출 또는 은행과 약정한 다른 대출이 연체중인 경우
3.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4.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이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한 발주서를 전송하는 경우
7.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용도 외의 발주서를 전송하는 등,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8. 미래대출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협력기업에 대하여 발주서를 전송하는 경우
9.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상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 7 조 (매출채권 확정 등)

①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납품 완료 즉시 발주서상의 납품기한까지 은행에게 전자적인 방식 등으로 채권확정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서방식 미래대출의 채권확정 시 대금지급일자는 발주서 만기일 이내에서만 지정 가능합니다.

③ 발주서방식 미래대출의 확정된 매출채권 내용의 변경은 대금지급일 전일까지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사항만 가능합니다.

1. 매출채권 금액의 증액
2. 발주서 만기일 범위내에서의 대금지급일의 연장

5-06-0415(2 - 4) (2016.06.07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245호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5년)

④ 발주서전환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하기로 하며, 협력기업의 해당 발주서 관련 미래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구매론 선입금을 실행하여 미래대출을 상환 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채권양도)

① 은행은 협력기업과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양도인인 협력기업의 대리인으로서 스스로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②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 양도통지를 받는 경우 필요 시 매출채권 양도승낙서를 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기업은 매출채권양도통지 접수일 이후부터 다음 각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또는 채권의 이중양도 통지 등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은행이 양도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 9 조 (매출채권 대금의 지급)

① 구매기업은 제 7 조에 의해 확정된 매출채권 명세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일의 은행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의 구매기업 명의 계좌로 매출채권 명세에 기재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② 은행은 입금된 대금을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미래대출 상환 후 남은 매출채권 대금 및 미래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매출채권 대금은 전항의 방법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사정으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 매출채권 대금 결제로 인하여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실행 및 이자징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⑤ 구매기업이 제 1 항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⑥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의 경우에는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매출채권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상환책임)

① 대금지급일까지 발생한 협력기업의 미래대출 원금과 이자, 지연배상금 등에 대하여 구매기업은 확정된 매출채권 금액 범위내에서 상환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대금지급일에 확정된 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입금하여 협력기업의 미래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구매기업은 대금지급일부터 입금일까지 은행계정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확정된 매출채권금액 범위 외에 별도로 부담합니다.

③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에 대하여 미래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그 대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은행계정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④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확정을 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 1 항에 따라 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1.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 취소, 변경,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3.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제 11 조 (시스템 운용)

①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인 방식 등을 이용하며, 외부요인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통보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 일방이나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고 **구매기업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구매기업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 혹은 당사자 일방이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손해를 협력기업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협력기업이나 제 3 자에 대한 배상 청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___년___월___일까지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해당 만기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구매기업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단, 이미 취급된 미래대출 잔액에 대하여는 제 10 조에 따라 계속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3 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 14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5 조 (특약사항)

20 년 월 일

[구매기업]

_____

_____ (인)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인)

5-06-0415(4 - 4) (2016.06.07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245호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5년)